



국토교통부

보도해명자료

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 포 일 시	2022. 11. 25.(금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 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안전운임제 위반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- ◆ 대전·충남 화물연대 파업에 수백 대 멈춰...“안전운임제 지속해야”(11.24, KBS)
- 화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화물차 운전자 인터뷰 인용

-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조항과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, 11월 22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되었으며,
- 11월 23일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,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 - 정부는 ‘안전운송운임 및 화주 처벌조항 삭제’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,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